

GS에너지 책임투자 정책

(Responsible Investment Policy)

제·개정일자	2024.03.25 (제정)
--------	-----------------

목차

제 1 장 총칙.....	2
제 1 조 (목적).....	2
제 2 조 (정의).....	2
제 3 조 (범위).....	2
제 2 장 투자 기본 원칙.....	3
제 1 조 (책임투자 원칙).....	3
제 3 장 투자 이행 지침.....	4
제 1 조 (투자 거버넌스).....	4
제 2 조 (투자 절차).....	4
제 3 조 (투자 기준).....	5
제 3 장 정책 관리 지침.....	9
제 1 조 (담당 및 승인).....	9
제 2 조 (검토).....	9
부록.....	9
참고문헌.....	9
제·개정 이력.....	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GS에너지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요소가 당사와 투자대상의 직접적/간접적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투자 과정에서 해당 요소를 통합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이에 기존의 투자 접근방식에 ESG를 연계하기 위한 '책임투자 정책(Responsible Investment Policy)'을 수립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본 정책에서는 GS에너지의 책임투자 관련 업무 수행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책임투자 이행을 위해 본 정책을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는 GS에너지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ESG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3조 (범위)

책임투자 적용의 범위는 본 정책에서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한, GS에너지의 투자 대상과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기업, 사업, 프로젝트를 총칭한다.

제2장 투자 기본 원칙

제1조 (책임투자 원칙)

GS에너지의 책임투자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방침으로 다음의 6가지 책임투자 원칙을 제정하며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원칙 1. 투자대상 분석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요소를 적극적으로 통합한다.

원칙 2. ESG관점에서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책임투자 발전에 기여한다.

원칙 3. 책임투자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 및 협력한다.

원칙 4. 투자대상 기업의 ESG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관여(Engagement)활동을 추구한다.

원칙 5. 효과적인 책임투자 이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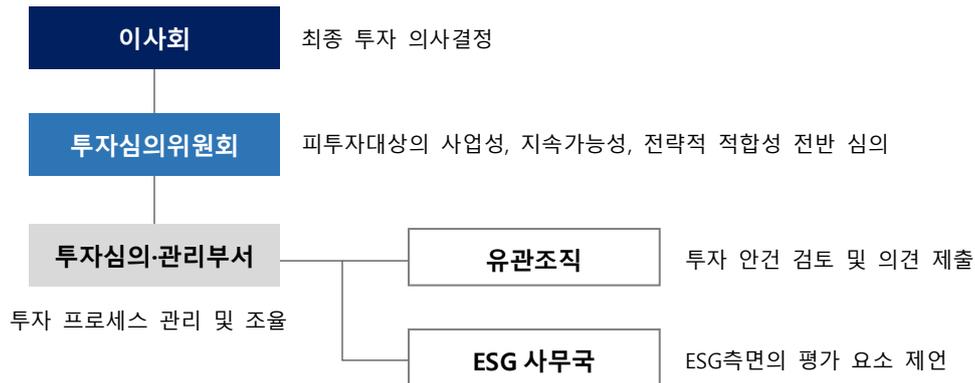
원칙 6. 책임투자 방향성과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책임투자 원칙 이행 활동과 결과를 보고한다.

제3장 투자 이행 지침

제1조 (투자 거버넌스)

GS에너지의 투자 과정에 관여하는 전반적인 조직 체계와 각 조직이 담당하는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투자 거버넌스]



제2조 (투자 절차)

GS에너지의 투자 절차는 크게 투자 발의, 유관조직 검토, 투자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및 의결, 이사회 심의 및 의결, 투자 결정 및 이행으로 진행된다. 투자 발의 시에는 해당 투자 안건의 목적과 타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관조직은 투자 안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고 사전 투자심의위원회는 유관조직의 검토 의견과 ESG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GS에너지 및 자회사 부담 비용 50억원 이상, 계열사 편입 대상 혹은 해외투자사업은 반드시 사전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건 중 경영 상 중요도/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반드시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을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투자 절차]



*투자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GS에너지 및 자회사 부담 비용 50억원 이상, 계열사 편입 대상 혹은 해외투자사업 등 투자 안건 포함

제3조 (투자 기준)

GS에너지는 투자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ESG요소를 통합하고자 하며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피투자기업의 ESG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시켜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투자 사전 검토 단계부터 최종 투자 의사결정까지 각 단계별로 피투자기업의 ESG리스크를 검토하기 위한 투자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정책 제정 이후부터 진행되는 신규 투자 시에 동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단, GS에너지가 투자회사의 경영권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과의 협의 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투자기준의 적용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ESG리스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투자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투자 프로세스 단계별 적용되는 투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자 사전

1) 투자 제한 대상 점검 기준 (Negative Screening)

GS에너지는 환경 및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기업체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는 대상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를 제한하기로 한다. 단, 투자 고려 대상이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최근년도 매출 비중이 30%이상일 때 투자를 제한한다.

(1) 제품기반

- 담배, 마약 생산/유통업
- 집속탄, 대인지뢰, 생화학무기 등 군수 무기 제조/거래업
- 석탄 채굴 및 채광업
- 오일 샌드 채굴 및 채취업

(2) 행위기반

- 심각한 인권 침해 등의 비윤리적 행위 (열악한 노동조건, 아동/강제노동)
- 불법 도박 및 카지노, 포르노 등 성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행위
- 동물 실험 및 동물 학대,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생물종¹ 불법 포획 및 거래 행위

¹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IUCN(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에 따름

(3) 지역기반

- 국내 법률 또는 국제 규약에 따라 지정된 생물권 보전 지역, 문화유산 인접 지역²에서 생물다양성 파괴, 문화재 훼손 등을 야기하는 경우

-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및 국가와의 무역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 적용 예외 경우

GS에너지 및 자회사의 고유목적사업인 경우

2) 친환경 활동 판단 기준 (Green Activity)

GS에너지는 환경 분야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신사업 투자 목적에 친환경성을 연계하고자 한다. 이에 EU Taxonomy와 K-Taxonomy에서 지정한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친환경 경제활동 목록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의 친환경 활동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ESG 이행 현황 진단 기준 (ESG Checklist)

피투자기업의 ESG이행 현황 및 주요 리스크를 투자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여 적용한다. ESG체크리스트는 피투자기업의 규모, 업력, 비즈니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3가지 단계(Level1~Level3)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로 적합한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한다. 피투자기업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단계의 체크리스트를 자가 진단하도록 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ESG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진단 결과를 통해 파악된 피투자기업의 중대한 ESG리스크를 투자 검토 및 심의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ESG체크리스트 주요 항목]

환경(Environmental)
· 환경경영 이행을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문서화된 환경정책 또는 환경방침을 보유하고 있는가
· 지난 4개년간 환경 관련 법규(또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 주요 환경 분야와 연계된 목표를 수립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²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UNESCO Biosphere Reserves, UNESCO World Heritage List에 따름

-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사회(Social)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문서화된 안전보건 정책 또는 방침을 보유하고 있는가
- 지난 4개년간 사회 관련 법규(또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 안전보건 분야와 연계된 목표를 수립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방침을 보유하고 있는가
- 인권정책 및/또는 인권경영방침을 보유하고 있는가
- 임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지배구조(Governance)

- 윤리경영 및 반부패 분야 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전사적 차원의 행동강령을 보유하고 있는가
 - 지난 4개년간 지배구조 관련 법규(또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 창업자/대표이사가 과거 비윤리적 행동으로 문제된 적이 있는가
 - 임직원의 부패 및 이해상충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가
 - 조직의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조직의 정보/사이버 보안을 위한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2. 투자 심의 및 결정

ESG리스크 검토 기준의 결과를 종합한 최종 ESG리스크 진단 결과를 도출하여 투자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및 의결,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시에 참고자료로써 활용한다. 또한 ESG측면에서 피투자기업의 개선점과 사후 관리 지점을 발굴하고 후속 모니터링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투자 이후

피투자기업 ESG리스크 관리는 GS에너지의 안정적인 성과 창출은 물론 피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투자 이후에도 피투자기업의 실질적/잠재적 ESG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피투자기업의 ESG리스크를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 현황을 점검하기로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피투자기업에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선 장려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리스크 수준에 따른 후속 관리를 진행한다.

1) 중대한 리스크

법/규제 위반사항, 창업자/대표자의 비윤리 행위 등 중대한 위험 사항이 파악된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위반사항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개선

계획에는 개선 내용과 개선 시점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2) 경미한 리스크

일반적인 위험사항이 파악된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이행 방안을 안내 및 지원한다.

제3장 정책 관리 지침

제1조 (담당 및 승인)

본 책임투자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최초 제정 및 향후 개정 시의 최종 승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문서 개정 사유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승인자는 그 내용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기로 한다.

제2조 (검토)

1. 검토주기

최소 연간 1회 이상 본 정책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문서를 개정할 수 있다. 사업 범위의 변경, 사업 주체의 변경, 관련 법률 및 규제의 변경 등 책임투자 관련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본 문서를 검토하기로 한다. 본 문서의 변경사항은 부록의 '제·개정 이력'에서 관리한다.

2. 검토사항

국내외 투자기준, 투자 관련 주요 법률/규제/지침, ESG 관련 국내외 정부의 분류 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사항이 GS에너지의 책임투자 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본 정책에 반영한다.

부록

참고문헌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TECHNICAL WORKING GROUP (2021.08, EU)

Taxonomy Report: Technical Annex (2020.03, EU TEG on Sustainable Finance)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021.12, 환경부)

제·개정 이력

2024년 03월 25일, 책임투자 정책 제정